

제한경쟁(용역) 입찰 안내공고

물품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 7.

서해5도특별경비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음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예규, 공고일 현재)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공고일 현재)
9.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훈령, 공고일 현재)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공고일 현재)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지침, 공고일 현재)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으로 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1. 입찰 개요

구분		내용	
○ 수요기관		서해5도특별경비단	
○ 공 고 명		경비함정 자이로 컴파스 교체(IRU) 수리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	
○ 세부품명		GYRO COMPASS(MK-31, IRU 동등 이상)	
○ 수량/단위		1종 1점	
○ 사업금액	89,1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81,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국내입찰
○ 수리기한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규격서에 따름
○ 하자보증기간	1년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구분	내용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7. 29. 10:00 ~ 8. 6. 10:00
○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 8. 5. 18:00
○ 개찰일시	2026. 8. 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유의사항>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천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참고사항] * 세부내용은 수리기준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 ❖ IRU는 사용기간 확대를 위해 기존 Ring Laser 방식이 아닌 **광섬유(Fiber Optic)방식으로 교체**
- ❖ 원활한 경비함정 운용을 위해 **불량 확인시 즉시(24시간 이내) 점검 또는 임시 대체품**으로 조치, **불량판정 제품은 30일 이내 수리** 必
- ❖ (사전제출 서류) 수리장비 신뢰성 보장을 위해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형식승인서 사전 제출** 要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의거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 必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 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의거 항만운송관련 사업(선박수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 5958**)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여 불가

▶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 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 문의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 (신원확인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은 그 전일) 18:00까지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전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7호 [별표7]

* 적격심사 :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다.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합니다.
-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았으나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 시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라.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천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7.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바랍니다.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해5도특별경비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각 호 위반행위 확인을 위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 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 가. 본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나. 본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위 항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인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인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인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인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절차를 훼손한 행위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 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바랍니다.
-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집행하는 입찰 집행에 대하여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고 관련 문의처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입찰 및 계약 :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리계 경사 윤대산(☎ 032-835-3217)
 - 물품관련 세부내역 : 서해5도특별경비단 정비보급계 경사 윤동성(☎ 032-835-3574)

2026년 7월 29일
서해5도특별경비단 분임재무관

[별표 1]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 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절차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대표 ○○○ (인)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귀하